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다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는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을 위탁하여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본 위탁사업의 기간이 만료('24.12.31.)에 따라, 2회차 사업의 준비단계에 있으며, 사무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의2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5조

다. 위탁사무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강화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전반(회의, 연구과제, 학술행사 등)
-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
- 시정 전반에 대한 중앙시책-경북도정과 연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 강화
- 사업예산 편성·지출 및 결산보고
- 정책 관련 리포트(정책 동향·분석 등) 작성\* \* 정책연구위원회 연계

라. 위탁기간 : 수탁일로부터 3년(2025년 ~ 2028년 중)

마. 위탁조건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과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사. 소요예산 : 연간 145,000천원 정도 (시비 100%)

아. 성과평과결과 : 탁월(90점)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해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문시스템 활용 방안 및 정책현장 토론회가 활용 부서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음

자.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 지난 1년 6개월 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과 및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구미정책개발센터(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와 재계약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5조

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 위탁기관 : 구미정책개발센터(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 위탁기간 : 2023. 7. 17. ~ 2024. 12. 31.
- 사 업 비 : 174.9백만원('23년 80백만원, '24년 94.9백만원)
- 평 가 자 : 5명(정책개발팀장, 정책지원 활용 4개 사업담당 팀장)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부문 평가항목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총 점
	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사무관리	사업수행	문제해결	감점	
배 점	10	10	10	10	20	30	10	-5	100
평 점	9	8	9	10	19	26.4	8.6	0	90

##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탁월 (90점)
- 총 평
  - 본 사무의 위탁사업은 총점 90점을 획득하여, 전체적으로 우수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해온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문시스템 및 정책 현장 토론회에 대한 활용 부서의 만족도가 높음
  - 또한 관내 대학과 구미시가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 체계를 마련함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 사업기간 : 2023. 7. 17. ~ 2024. 12. 31.
2. 사 업 비 : 174.9백만원('23년 80백만원, '24년 94.9백만원)
3. 사업내용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전반 및 정책연구·개발 등
4. 추진실적
  - 2023년 사업성과 실적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3개 분과, 50명)
    - 정책현장 방문('23.10. 27./ 구미시 일원)
    -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증대 방안 토론회 개최('23.12. 28./ 금오공대)
    - 정책자문 체계 구축 및 수행(6건)
    - 각 분과별 연구과제 추진(3건)
  - 2024년 사업성과 실적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확대 및 운영(3개 분과, 50명→60명)
    - 제1회 지속성장정책포럼 개최 및 '23년 운영성과 공유('24. 1. 19./ 금오산호텔)
    - 농촌경제 자문회의 개최('24. 2. 27./ 선산출장소)
    - 낙동강 수변자원 활용방안 정책현장 토론회 개최('24. 5. 31./ 도개전망대)
    -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수행(16건)
    - 각 분과별 연구과제 추진(4건)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무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1. 심의개요

- 일 시 : 2024. 9. 12.(목) 15:00 ~ 17:00
- 장 소 : 구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
- 심의대상 : 구미정책개발센터(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 심의내용 : ① 재계약 적정 여부, ② 성과평가 결과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재계약 적정성 정성부문 심사평가표 작성 및 성과평가 결과 심의
  - (성과평가 결과 심의) 성과평가 결과·평가서 열람 및 부서 설명 후 결과에 대한 적정 심의
  - (재계약 적정성 여부) 정성부문 심사위원 평가표 작성 후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 점수와 정량평가(부서평가) 점수 총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으로 수탁 결정

##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성과평가 결과 심의) 심사위원 전원 성과평가 결과가 적정하게 심의되었음을 의결
  - (재계약 적정성 여부) 평가점수 총계 90.8(91)점으로 재계약 적정 평가 '적격' 심의

[재계약 적정성 평가 총괄표]

구 분(배점)		수탁기관	비 고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20)	20	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80)	70.8(71)	심사위원 평가
	합 계	90.8(91)	

[재계약 적정성 평가 기준표]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총 계			100
정 량 적 평 가 (20) (사업부서 평가)	법인(단체) 신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의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li> <li>- 재계약 심사일 전월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 1월마다 배점 10%(1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li> </ul>	10
	법인(단체) 재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의 자산 및 재정 능력</li> <li>※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증 택1)</li> </ul>	10
정 성 적 평 가 (80) (심의위원 평가)	사업수행 내 용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	10
		• 사업수행의 분석 및 이해도	10
		• 사업 목적의 적정성, 차별화 전략 등	10
		•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실효성 등	20
		• 향후 사업달성을 위한 예산편성	10
	• 사업추진 시 사업수행 능력(사업관리) -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 제시	15	
사업수행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성</li> <li>- 사업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li> </ul>	5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위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정책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역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 민간위탁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및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5년간 본 수탁사무에 따른 시비는 총 801,218천원으로 연평균 160,244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비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현물지원(사무인력, 공간활용 등)에 대한 추계
- 2차 연도부터 운영비 인상률 5%로 반영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145,000	152,250	159,863	167,856	176,249	801,218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145,000	152,250	159,863	167,856	176,249	801,218
기타	61,800	61,800	61,800	61,800	61,800	309,000
합계	206,800	214,050	221,663	229,656	238,049	1,110,218

※ 기타 비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현물지원 부분을 명시함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배수정 (☎480-6512)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총계	145,000	
인건비	40,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연구 지원 인력 급여 등 4,000천원 x 8개월 = 32,000천원</li> <li>센터장 수당 700천원 x 12개월 = 8,400천원</li> </ul>
운영비	9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과제 수행 12,000천원 x 3개 = 36,000천원</li> <li>전문가 자문비 300천원 x 30회 = 9,000천원</li> <li>학술행사비 5,000천원 x 5회 = 25,000천원</li> <li>회의참석 수당, 식비, 다과비 21,040천원</li> </ul>
일반수용비	5,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ZOOM 이용비 등 193천원 x 12개월 = 2,316천원</li> <li>기타 사무관리비 3,494천원 x 1식 = 3,494천원</li> </ul>
여비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여비 500천원 x 1식 = 500천원</li> </ul>
간접비	7,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 7,250천원 x 1식 = 7,250천원</li> </ul>

※ 항목 간 소요예산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과
입 안 자	과 장	박 노 돈
	팀 장	김 지 훈
	담 당 자	배 수 정 (480-6512)